

#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 가락일중학교 설립요구」에 관한 청원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 청원번호 : 60번
- 청 원 자 : 경기도 하남시 위례중앙로 215, 윤병일 외 2,133명
- 소개의원 : 강감창 의원(새누리당, 송파4, 기획경제위원회)
- 접수일자 : 2016년 12월 13일
- 회부일자 : 2016년 12월 15일

### II. 청원요지

- 송파 헬리오시티는 2018년 12월 입주예정인 국내 최대규모(9,510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송파구 가락1동 일대의 생활환경을 크게 변동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 관련 잠실일대의 신규아파트 학생쏠림현상을 감안하여 중학교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송파 헬리오시티내에 가락일중학교를 설립해줄 것을 청원함.

### III.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 송파 헬리오시티는 2018. 12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로 송파구 가락1동 일대의 생활환경을 크게 변동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강동교육지원청은 가락일중 신설기획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신설안건을 부의하였음.
-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점을 들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학교 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학교신설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음.
- 만약 가락일중학교가 신설 되지 않으면 헬리오시티거주 중학생들은 10차선 대로를 횡단하여 인근 지역으로 등하교함이 자명함에 따라서 가락일중학교의 설립이 필요함.

### IV.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법률 제14197호, 2016. 5. 2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56호, 2016. 3. 25, 타법개정)
- 청원법(법률 제12922호, 2014. 12. 30, 일부개정)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청원경위 및 주요내용

-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 가락일중학교 설립 요구」 청원은 2016년 12월 13일 강감창 의원의 소개로 윤병일 외 2,13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청원은 송파구 가락1동 헬리오시티의 입주로 이 지역 인근 중학교만으로는 향후 학생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가칭)가락일중학교(이하 ‘가락일중’)를 설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청원의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청원의 가락일중 설립예정지는 강동송파 3학군에 속하는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일대로, 동 학군이 속해있는 지역은 현재 2014년 입주 예정으로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송파구에서 10년 만에 대규모로 추진되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은 1982년 준공한 6,600가구를 허물고 2018년까지 9,510가구를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 동 지역은 강동송파 3학군 내에서 재건축되는 가락시영아파트로 인해 1,436명의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바, 가락시영아파트 일대에 중학교를 설립하여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취지 면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1] 강동송파 3학군 지역 재건축 사업 현황

구분	입주예정	추진상황	세대수			유발 학생수
			기존	완성	증가	
가락시영	2018. 12	착공	0 (6,600)	9,510	9,510 (2,910)	1,436
잠실5단지	2021	조합설립 인가	3,930	6,529	2,599	395
진주	2022	조합설립 인가	1,507	3,042	1,535	233
미성·크로바	2022	조합설립 인가	1,350	1,990	640	97
장미	2024	정비구역 지정	3,522	5,811	2,289	343
우성 1~3차	2024	정비구역 지정	1,842	2,764	922	138
합 계			12,151	29,646	17,495	2,642

#### 나. 가락일중학교 학교설립에 대한 검토

##### 1) 학교설립 경과

-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가락시영아파트내 가락일중을 신설하기 위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2013년 12월 학교용지(12,705m<sup>2</sup>)를 기부채납 받았고(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15898), 서울시교육청은 재정투자심사(예산담당관-9552)를 거쳐 동 부지에 가락일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인근학교 분산배치 방안 및 타당성 조사 실시’를 이유로 ‘재검토’로 결정되었는 바(예산담당관-3340),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에 따라 가락일중 신설관련 타당성 조사를 서울시교육청에 의뢰하였고(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5165),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제3차 추경에 가락일중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sup>1)</sup> 현재 타당성 조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학교설립의 필요성

- 동 청원의 대상이 되는 가락일중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따른 증가되는 중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송파구 가락동 479번지 일대에 25학급 규모로 신설하려는 학교입니다.

[표-2] 학교설립 및 주택입주 현황

구분	학교명	위치	개교시기	완성기준(2019년)			입주계획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개발사업명	세대수	학생수	입주시기	분양공고일
신설	가락일중	가락동479일원	2019.3월	816	25(1)	34.0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9,510	1,436	2018.12	2015.10

- 현재 강동송파 3학군은 대규모아파트 입주가 예정되는 2024년까지 중학생 2,642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락시영아파트는 2019년에 중학생 1,436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동 학군내 설립되어 있는 10개교는 증가되는 학생을 분산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를 신설하지 않을 경우 2024년에는 10개교 평균 급당인원이 34명으로 과밀화가 발생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더욱이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1,436명의 중학생은 인근 가락중, 일신여중, 배명중에 분산배정 하여야 하나, 수용여건이 부족하여 원거리 배정을 받는 학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원거리 통학의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 바, 가락일중 신설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특히 현재 대상지역내 중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고, 동 청원의 처리기관인 서울시교육청도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학교설립을 위해 노력하겠

1)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69쪽.

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예상되는 학생불편 해소를 위해 동 청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3] 인근 3개교 분산배치 검토

구분	2016학년도 편성인원					분산재배치 가능성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일반교실용가능교실수	수용여건		개교년도(19년)추정학생수	개교년도+1년(20년)추정학생수	개교년도+3년(22년)추정학생수	분산재배치
						교육부기준(34명)	교육청기준(28명)				
인근학교용역가능학생수	배명중	25	720	28.8	0	850	700	1,042	1,037	1,049	불가
	일신여중	24	519	21.6	0	816	672	989	984	996	불가
	가락중	27	705	26.1	0	918	756	1,110	1,105	1,117	불가
	합계	76	1,944	25.6	0	2,584	2,128	3,141	3,126	3,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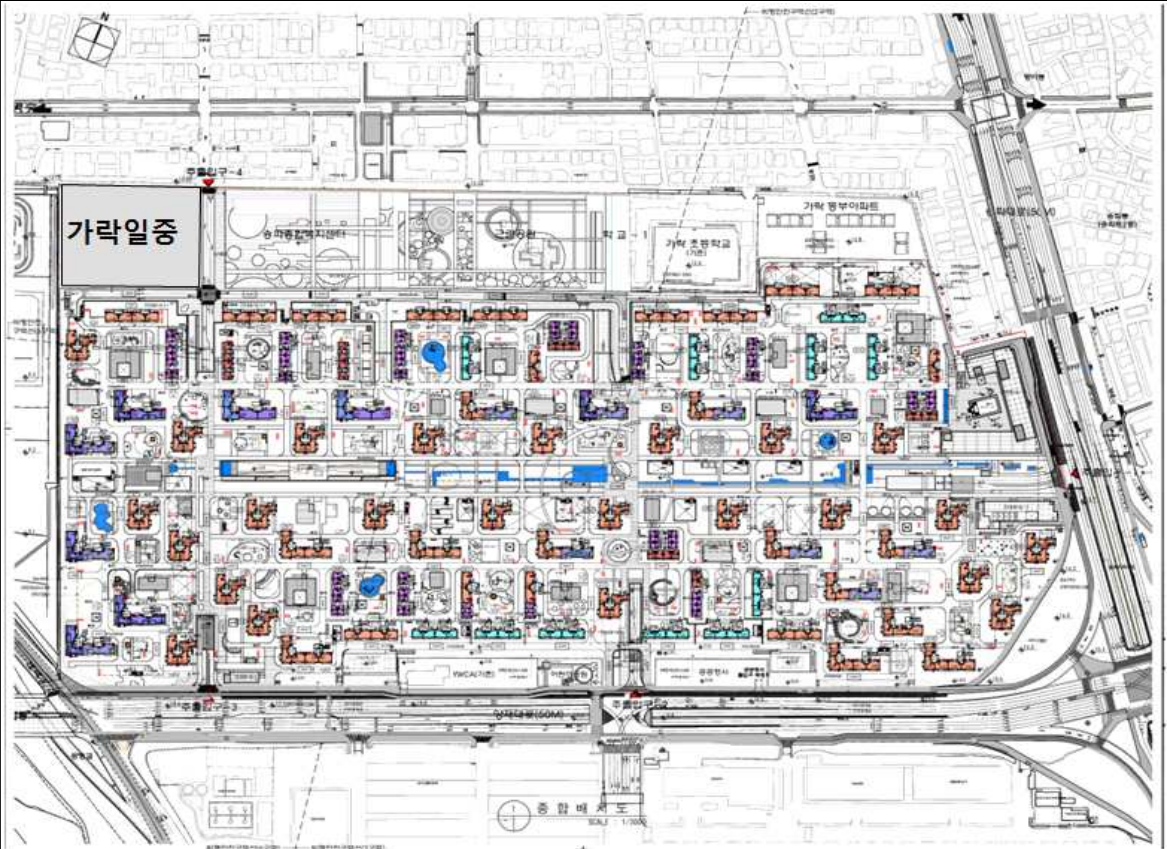
[표-4] 인근 학교 현황(강동송파 3학군)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거리			시설현황		교실증축판단	
				실거리(m)	시간(분)		전교실수	일반교실수	수평	수직
					도보	대중교통				
배명(남)	720	25	28.8	796	8	-	52.5	25	×	×
일신여	519	24	21.6	1,300	17	-	61.5	24	×	×
가락	705	27	26.1	2,100	29	21	68	28	×	×
방산	561	19	29.5	2,800	37	23	66	21	×	×
방이	538	21	25.6	2,800	39	23	69.5	24	×	×
아주	665	24	27.7	3,200	38	25	69	26	×	×
잠실	1,253	37	33.9	3,200	43	25	68	37	×	×
정신여	958	39	24.6	3,700	45	26	79	39	×	×
잠신	1,295	35	37	3,900	52	27	71.5	36	×	×
신천	1,233	36	34.3	3,900	53	27	64.5	37	×	×

이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내 가락일중학교 설립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붙임] 가락일중 학교 설립 예정 위치 및 인근학교 배치도

가락일중 학교 설립 예정 위치



한구내 인근학교 배치도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6.3.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타법개정]

제58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 청원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22호, 2014.12.30., 일부개정]

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시행 2010.1.7.]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17호, 2010.1.7., 일부개정]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수사·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
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6조(청원의 심사·처리)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0조(심사보고)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1.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2. 교육감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
3.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